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. 2. 20 선고 2017가단253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고 1. A

2. B

피고 1. C

2. D

3. E

4. F

5. G

6. H

7. I

8. J

9. K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18. 2. 2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전남 완도군 L전 991㎡ 중 별지 표 기재 지분의 각 1/2 지분에 관하여 1999.

11. 3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,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전진우

별지